

구유재산 매각 처분 신청서

1. 재산의 표시

가. 재산 가격평정

(단위 : m², 천원)

구 분	재 산 별	소 재 지		지 목	신청면적	재 산 가 격 (공시지가)	비 고
		동 명	지 번				
토 지	구유재산	괴 정 3 동	240-91	임	18	20,700	
토 지	구유재산	다 대 2 동	85-18	잡	97	97,000	
토 지	구유재산	다 대 2 동	49-1	전	48	48,000	

나. 재산의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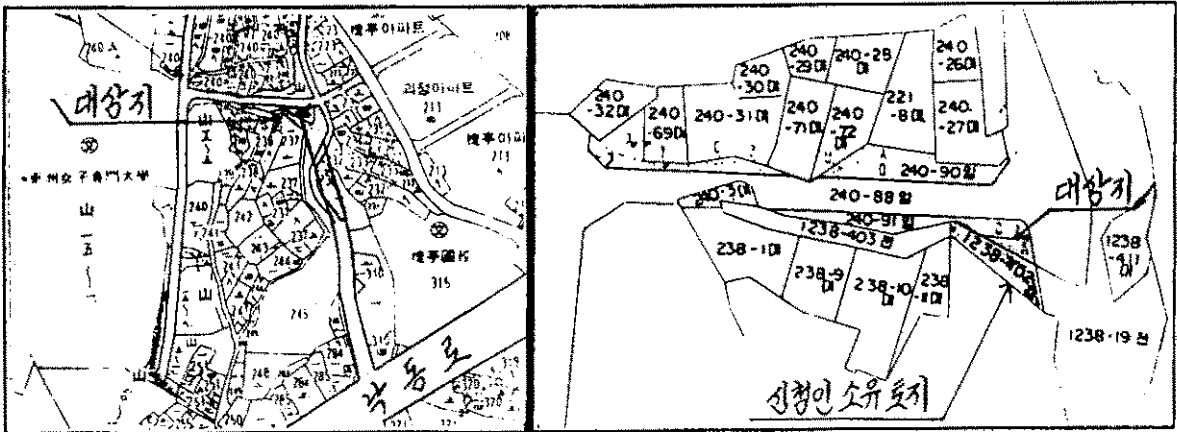
일련 번호	재 산 조 성		소 재 지		면 적 (m ²)		재 산 의 현 황 (점 유 형 태)	매 수 신 청 인
	일 자	목 적	동 명	지 번	지 적	신청면적		
1	93.4.27	승계	괴정	240-91	125	18	81. 4. 30이전부터 신청인 소유의 브룩 스트리트 건물 이 점유	괴정3동 237-1 전 대 성
2	93.3.27	승계	다대	85-18	97	97	신청인 소유 토지인 85-2 번지와 접하여 세차장 용 지로 사용	다대2동 86-6 박 지 연
3	93.3.10	승계	다대	49-1	48	48	사하구청 고시 제92-33 호로 도시계획사업시행 자로 지정	경남창원 성산동55 삼미금속

공유재산실태조사표

1. 재산의 표시

소재지	지목	면적 (㎡)	용도지역	점유자		비고
				주소	성명	
괴정 3동 240-91	임	125중 18	일반주거지역	괴정동 237-1 (3/1)	전대성	

2. 위치도



3. 재산의 연혁 및 현황

- 위 재산은 1993. 3. 30 괴정동 산 15-10번지에서 괴정동 240-88으로 등록전환되어 6m 계획도로에 속한 부분 괴정동 240-88번지는 "도로"로, 잔여부분은 괴정동 240-89, 90, 91번지 "임야"로 분할된 재산이며
- 1993. 4. 27 부산직할시 소유에서 사하구로 승계된 재산으로 동주여전 진입로변에 위치하며 '81. 4. 30 이전 신청인 소유의 브룩스레트 건물이 점유되어 있음.

4. 처리 의견

- 상기와 같이 '81. 4. 30 이전 건물이 점유되어 매각 조건에 해당되므로 공유재산 처분동의 및 가격감정 평가 후 신청인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.

5. 매각 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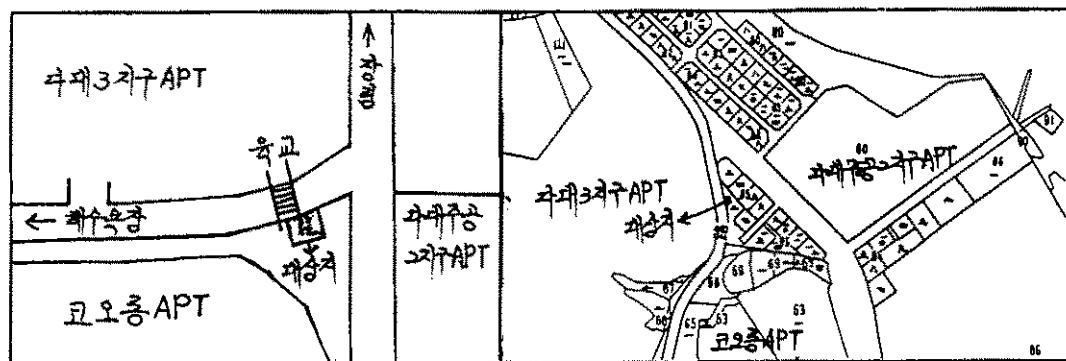
-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2 제1항

공유재산실태조사표

1. 재산의 표시

소재지	지목	면적 (㎡)	용도지역	점유자		비고
				주소	성명	
다대 2동 85-18	잡종지	97	주거지역	다대2동 86-6 (5/2)	박지연	

2. 위치도



3. 재산의 연혁 및 현황

- 위 재산은 당초 다대3지구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도로 예정지였으나 공사 완료후 도로에서 제외된 토지로 다대동 85-1번지인 도로에서 1993. 1. 20 용도폐지 후 잡종재산으로 편입되었으며, 1993. 3. 27 부산시에서 승계 받은 구유 잡종재산임.
- 위 재산은 신청인 소유 토지인 다대동 85-2번지와 접하여 현 세차장 용지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음.
- 동 재산과 접한 신청인 토지인 다대동 85-2번지는 당초 부산직할시 소유의 토지였으나 부산직할시로부터 공개입찰로 매각하여 1989. 4. 7 소유권 이전된 토지임.

4. 처리의 견

- 위 재산은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신청인이 당초 매수 때부터 점유하여 사용해온 토지로서 공유재산 처분동의 및 가격 감정평가후 신청인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.

5. 매각 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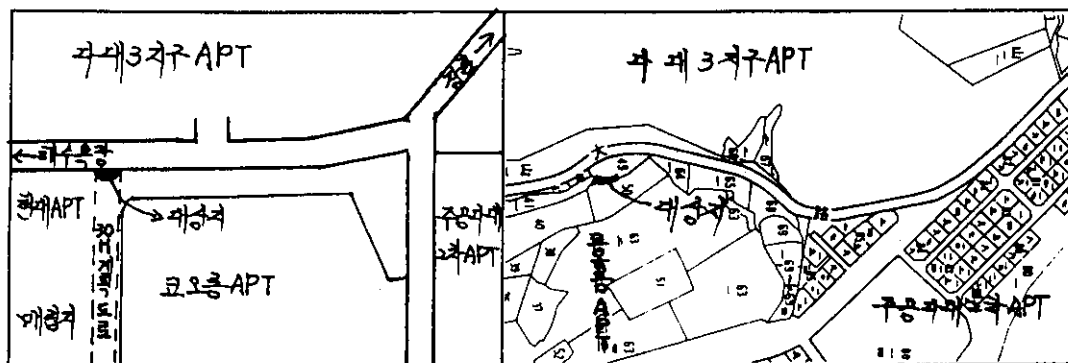
- 사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2 제2항

공유재산실태조사표

1. 재산의 표시

소재지	지목	면적 (㎡)	용도지역	점유자		비고
				주소	성명	
다대 2동 49-1	전	48	주거지역	경남 창원시 성산동 55	삼미금속(주)	대표 조병준

2. 위치도



3. 재산의 연혁 및 현황

- 위 재산은 당초 부산직할시 소유로 다대3지구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도로 예정지였으나 공사 완료후 도로에서 제외되었으며, 도시계획사업인 다대 항만매립 배후도로 개설공사에 포함된 재산임.
- 위 재산은 신청인이 부산시에 매수신청을 하여 이재 22400-23(93. 1. 12)호로 사하구에서 매각 처리토록 이첩된 재산으로,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거 1993. 3. 10자 부산시 소유에서 사하구로 승계된 재산임.
- 동 재산은 사업시행자인 매수신청인의 사업시행 구역내의 30m 계획도로에 속한 구유 잡종 재산임.

4. 처리 의견

- 위 재산은 사하구청 고시 제92-33호로 매수신청인에게 도시계획사업 인가된 재산이므로 공유재산 처분동의 및 가격 감정평가후 신청인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.

5. 매각 근거

- 사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2 제2항